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안도결 · 정준호 · 김한규  
이개호 · 박 정 · 이연희  
정진욱 · 민형배 · 전진숙  
이언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,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,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, 국민연금기금 관리·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
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, 외화채무 부담,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

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102조의2 신설 등).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02조의2에 따라 조달한 외화자금

제10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

제10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기금을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2조의2를 제102조의3으로 하고,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2조의2(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의 발행 등) ① 공단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국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을 발행하거나 외화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외화자금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

여 필요한 경우 출연·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제1항의 채권 또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원 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외화자금은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외화자금을 관리·운용하여 발생한 회수금 및 수익금은 제1항의 채권 또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,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협약하여 국채를 매입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~ 7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⑤·⑥ (생략)

<신설>

-----  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

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2항에 따라 기금을 해외 투자의 방법으로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제102조의2(국민연금외화표시채

권의 발행 등) ①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을 발행하거나 외화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외화자금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·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

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제1항의 채권 또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원 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외화 자금은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외화 자금을 관리·운용하여 발생한 회수금 및 수익금은 제1항의 채권 또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,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.

제102조의2(건강보험공단에 출연)  
(생략)

제102조의3(건강보험공단에 출연)  
(현행 제102조의2와 같음)